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이나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누리집에 공표토록 하고, 또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부진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책에 미반영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 중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록을 현행화하여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통보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 목록 정비(안 제3조제5항 및 별표1)

나. 위원회가 제시한 각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부진·개선사항을 정

책에 미반영 시, 기관으로 하여금 그 이유를 공문으로 위원회에 통지
토록 함 (안 제4조제7항)

다.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 또는 보완 요구를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 위
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함 (안 제4조제8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한다.

제4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는 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⑧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공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19호부터 제60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59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제68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60호부터 제6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6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
6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6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6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65.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6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67.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④ (생 략)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 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⑤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에 따른 <u>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u>	4. ----- -- <u>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 략</u>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 ⑥ (생 략)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미반 영 이유는 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u><신 설></u>	⑧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공표 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감축목표	⑨ ----- 제8항----- -----

의 이행현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기후전략과	
연 락 처	(044) 201 - 6652